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CONTENTS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1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과

2 지원센터 개요

3 지원센터 역할

4 주요패키지 지원 및 후보사례



1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과



일본 수출규제



수출규제 대응

2019. 7. 1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공식 발표

2019. 8. 2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설립·운영(7.22)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8.5)

- ①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 ②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8.28)

- ① 핵심품목에 대한 긴급 진단 실시 및 R&D 대응전략 마련
- ② '20~'22년 5조원 이상 예산 집중투자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10.1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 등 4개 안건 논의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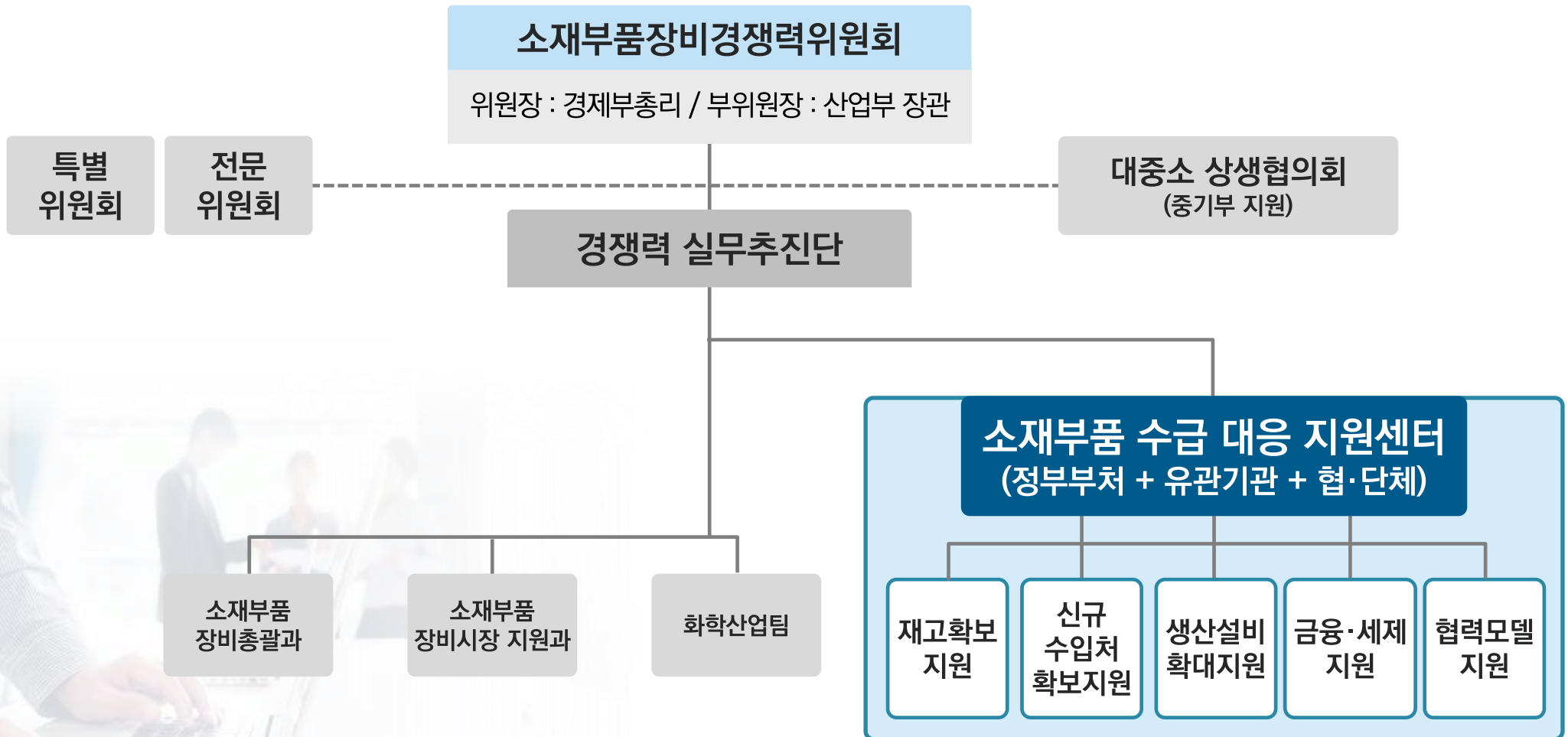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승인 등 6개 안건 논의

수출규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단기수급대응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품목별로 관련기업의 수입동향, 재고현황 등 수급실태 및 애로를 파악하고, 현장방문과 1:1 상담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정밀 실태 점검 및 애로 해소



수급애로지원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기업들이 겪는 당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



금융·세제지원

관련기업 국세, 관세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부담 완화, 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 등 충분한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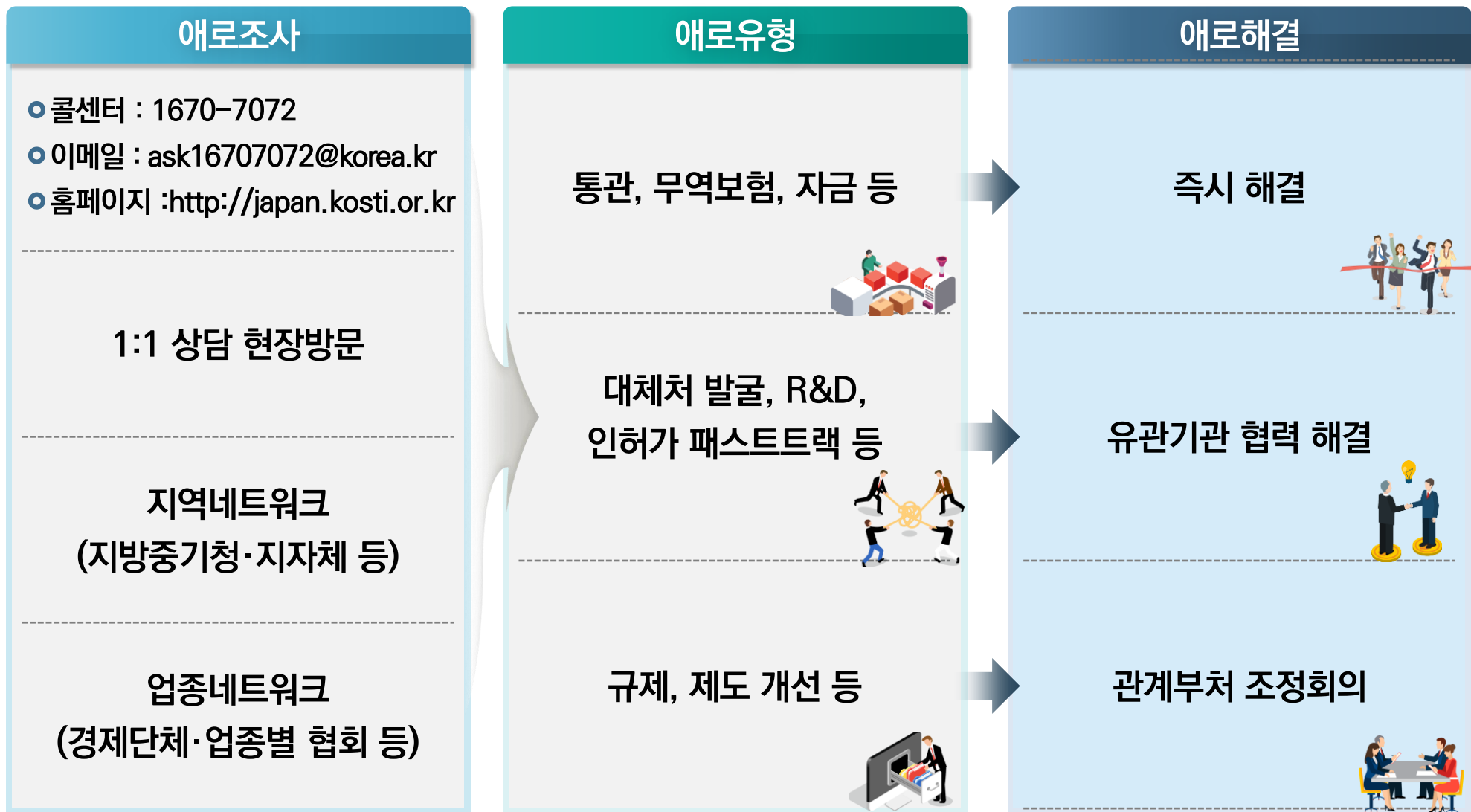


협력모델 정책지원

협력모델 발굴, 성과점검, 현장중심 소통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



3.1 기업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재고확보 지원

물량
확보

수출규제품목 대상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 연장(2~3개월 → 필요기간)

* 비축이 필요한 수출규제 품목이 주요 공항만 지정 장치장 및 CY(Container Yard)에 반입된 경우

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

* 공항만 '신속화 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15일 → 필요기간)

** 수출규제 대상물품이 공항만 '신속화 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미부과

신속
통관

수출규제품목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통관 지원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운영 및 전국세관 임시개청,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신규 수입처 확보

무역 보험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위해 제도 확대

- * 수입자금 대출시, 무보에서 추가 소요자금 일괄 보증 지원,
- **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시,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 추가 제공

공급처 발굴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 부품 공급업체 3~5개사 발굴* 및 현지활동 지원** (KOTRA 무역관)

- *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조사비용 부담 50% 이상 경감(대기업 30만원 → 15만원 이하 / 중견·중소기업 무료지원)
- ** 품목 전문성을 고려, 업종 협회·단체의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국가· 품목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매칭의 실효성 제고, 현지 네트워크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정보 제공
(예) (미국) 반도체 소재부품, (유럽)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중국) 에칭가스



생산설비 확대 지원

인허가	화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단축(75일 → 30일)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
	화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시험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조건부 先제조 인정 R&D용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 제출·확인 시 등록면제 인정 年 1톤 미만 수출규제 대응 신규물질은 한시적(2년)으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산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54일 → 30일)

연장근로	특별인가 연장근로제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
	재량근로제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노·시간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대상업무) '신상품 및 신기술 연구개발'에 제조업 실물뿐만 아니라 SW·게임·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 관련 업무 포함 (사용자 지시가능 범위)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 내용, 기한 등)과 근무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



세제지원

세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중소기업 신청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면제를 적극 수용하고,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조사 진행중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제출
	경정청구 즉시처리·환급금 조기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2개월 → 1개월)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법정기한 10일전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착수 중단, 조사연기·중지 신청시 적극 수용 * 납세자 조사 희망시 간편조사 실시 : 완화된 요건을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확대 실시, 신고성실 요건 완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 보류

지원센터 설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 지원대상 해당여부, 신청절차 등은 지방국세청·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



세제지원

관세 지원	납기연장, 분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범칙이* 없는 성실기업 중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 최근 2년간 관세범칙사실이 없을 것(통고처분 포함) ○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환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 신청 전 P/L(Paperless) 전환,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 지급 요청
	관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유예)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20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 유예 ○ (조사연기)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희망 시 관세 조사 연기
	외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피해예상 포함)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까지 외환검사를 유예 or 대상 선정에서 제외
	원산지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원산지조사 대상 선정에서 일정기간(1년) 제외



금융지원

만기 연장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시중은행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현재 17개 시중은행 전부 시행 중)
 -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세부기준
 -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

국내
중소·중견기업
↓
최대 6조원 규모

분류	프로그램명	지원기관(지원액)	지원규모	
기존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산은	2.5조원	2.9조원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산은(0.2)·기은(0.1)·중진공(0.1)	0.4조원	
신설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보(1.0)·기보(0.6)	1.6조원	3.8조원
	소재부품 연구개발 운전자금	기은	0.2조원	
	수입 다변화 지원	수은(1.0)·무보(1.0)	2.0조원	



목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세부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내에서
형성 가능한
기업 간 협력유형 구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의
협력사례 발굴방안을 마련

예산, 정책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내용 (“메뉴판”)을
제시하고 구체적 협력모델들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중점 추진



주요 협력모델 유형

수직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간)

01 | 협동 연구개발형

기술로드맵 공유 R&D
→ 기술활용 R&D

02 | 공급망 연계형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공동 Fab 등)

수평적 협력
(수요기업 간)

03 | 공동 투자형

협력사 공동 개발 / 시설 투자

04 | 공동 재고확보형

공동 구매,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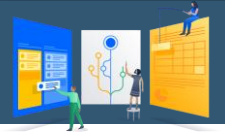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협력일 경우

대·중소 상생모델





- **조속한 공급망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해, 패키지 지원시 수요기업 참여 또는 예정 전제
- **R&D,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사항 마련 (“메뉴판”)
 - 개별 협력기업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기술개발(R&D) 예산 및 기술혁신지원

기술개발 예산

- **R&D 예산사업** 우선지원
 - 100대 핵심전략부품 관련에 총 1조480억원 반영
 - 소재부품기술개발, 기계·장비 기술개발 등의 수요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7,032억원 지원
 - 협력모델 지원에 필요한 신뢰성, Test-bed 구축 등 신뢰성분야에 1,834억원 지원
 -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1,186억원 지원
 -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연계 강화에 428억원 지원
 - 기술협력 후속지원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기술개발 후, **구매까지 연결되는 경우 후속 R&D 우대**

특허 등 기술혁신 지원

- **지식재산권 강화, 기술 이전 등 기술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우선제공
 - 지식재산권 강화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
 - 공공연구기간 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핵심특허 우선이전**
 - 기술이전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활용하여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상용화 R&D 지원

우수인력 지원

- **전문인력 및 유관기업 네트워크** 등 활용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우선지원
 - 기술자문단
 - 현장밀착형 기업 기술애로 해소 및 기업간 협력강화
 - KAIST·UNIST 등 운영 중인 기술자문단 확대
 - 중소기업 인력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

첨단장비 인프라 지원

- **소재·부품·장비 주요 핵심산업 분야에 대해 대형연구시설**을 기반으로 기업간 협력 촉진 및 공급망 연계·확대 등 지원 강화
 - 공공·민간 나노팜 간 협업 채널 구축으로 제품 성능 신속검증
 - 공공연구시설이 공동협력연구 플랫폼역할 수행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R&D에 참여



세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추가**

* (R&D 법인세 공제율) 대·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상생협력기금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제지원*** 가능

* ①기부금 손비인정,
②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③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공동출자·투자



-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R&D, 설비투자 목적의 공동 출자시** 법인세 세액공제(출자금의 5%)
-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 및 기간 연장('20~'22년)

* 대·중견기업 (취득세 35%, 재산세 35%),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 원천기술·신성장동력 분야 추가10%p



M&A



-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22년말 일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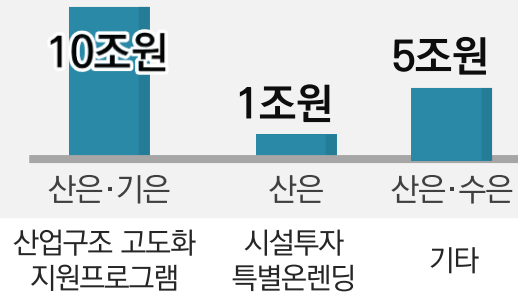
*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 (대 5%, 중견 7%, 중소 10%) 으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자금·보증 등(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R&D지원 등 경쟁력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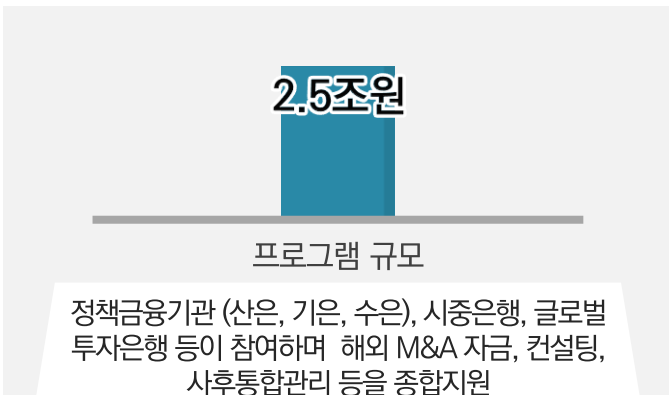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의 설비·기술투자·시설확대 등에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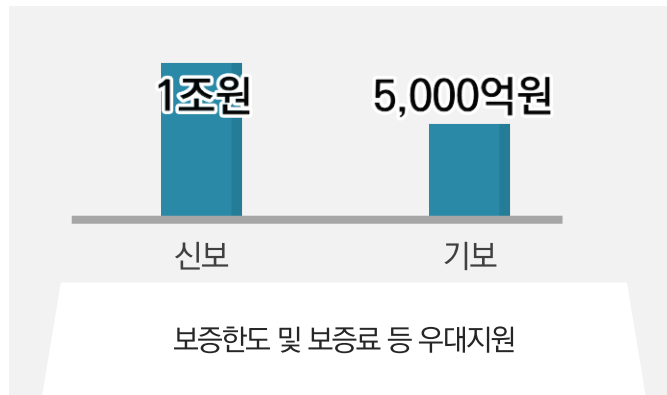
신성장기반자금 우선 제공 및 용자한도 확대
제외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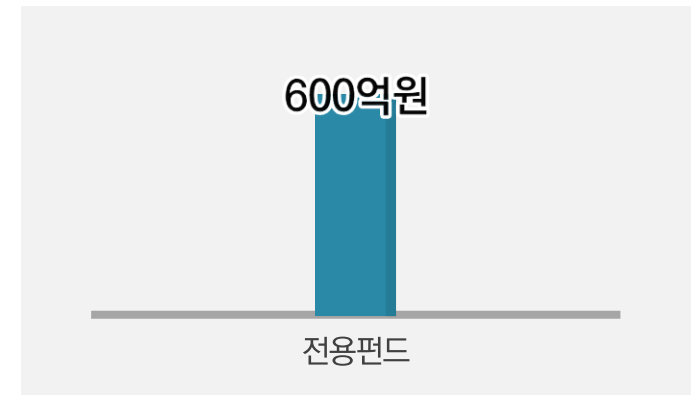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등을 통해 인수자금 지원



신보 및 기보의 소재·부품·장비분야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



대기업 등과 매칭하여,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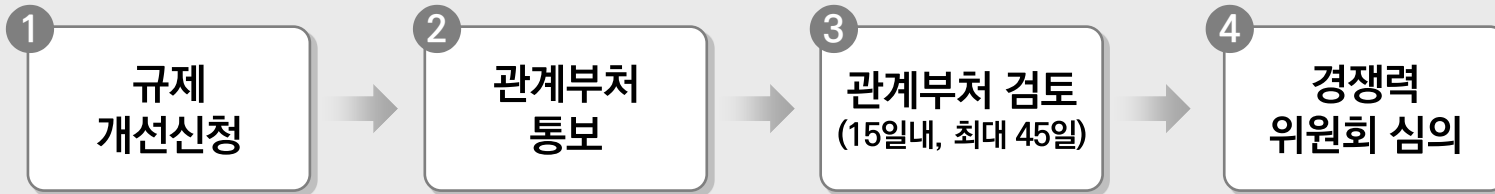


규제개선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필요한 기업의 규제건의는 **관계부처가 적극처리**하고, **법령 적극해석 및 조속한 법령정비 추진의무 부여**



협력모델 규제개선 절차



규제 샌드박스 적용

관련법령 적극해석 및 개정

특별법에 따른 특례지원

환경

- 신규로 발굴된 수출규제 대응물질 관련 투자 사례*에 대해 **공장인허가** 신속 추진

* 국내 인조흑연 관련 P社, D社는 생산공장을 증설 계획 검토 중

노동

- 소재·부품과 관련 생산설비의 연구 개발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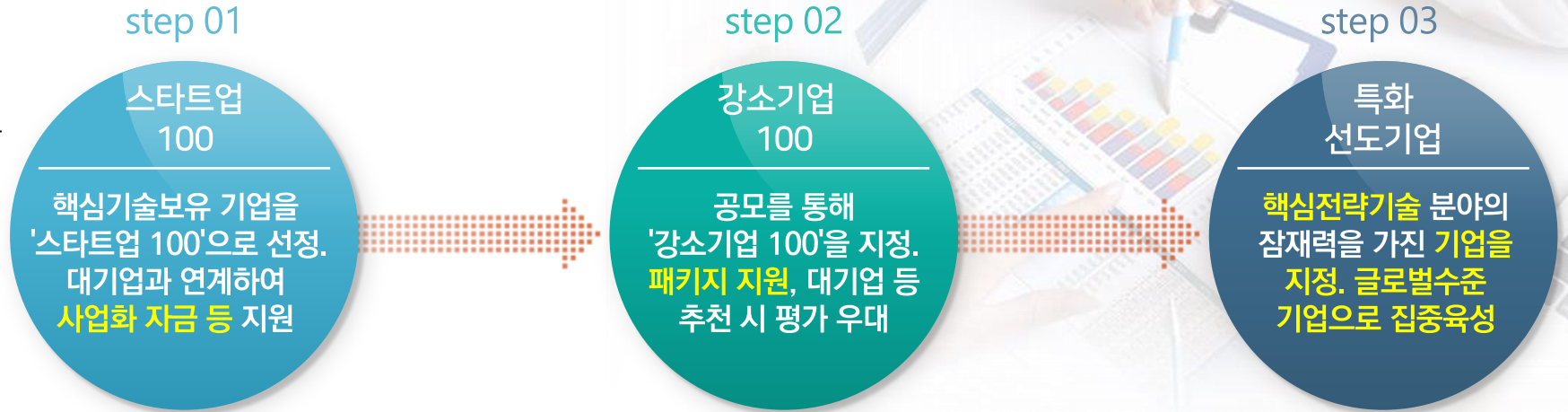
- 공동 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 산단 우선배정**하고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지원

*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지가 변동률을 연동한 수준으로 저가로 공급

핵심기업 성장지원

핵심기업 선정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술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지원



기업지원 인센티브

R&D참여 촉진,
해외인증지원,
공공시장 확대 등
인센티브 지원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혁신역량이 집적된 R&D 특구를
중심으로 혁신거점 내 첨단기업 간
협력에 대해 **종합패키지** 우선지원

- R&D, 네트워킹, 펀드,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한 **성장경로별 패키지 육성책** 지원
- * R&D 실증 규제특례 추진,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법인세 등 감면, 공장증설 등의 개발 인허가 일괄 처리,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및 입지규제 완화 등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기업) A社
(수요기업) B社, C社 등

- **기술개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탄소소재 기술개발 추진 (추경 30억원)
- **규제완화**
공급기업 공장부지 확보 및 에너지 자급 관련 해소 필요
- **규제완화**
수요기업 신축 공장 산단 입주 및 배출기준 상향 등 필요

공급망 연계형

(공급기업) D社 (전극)
(수요기업) E社, F社

- **공급망 연계**
신규 개발기술에 대해 수요기업(P社) 장비로 성능평가 연계
- **공급망 연계**
신규 개발기술에 대해 수요기업(Q社) 장비로 성능평가 연계
- **정책자금**
사업장 인수, 장비 추가구매 등 220억원 규모의 투자에 산은 등 정책자금 지원

혼합형 (협동 연구개발형 + 공급망 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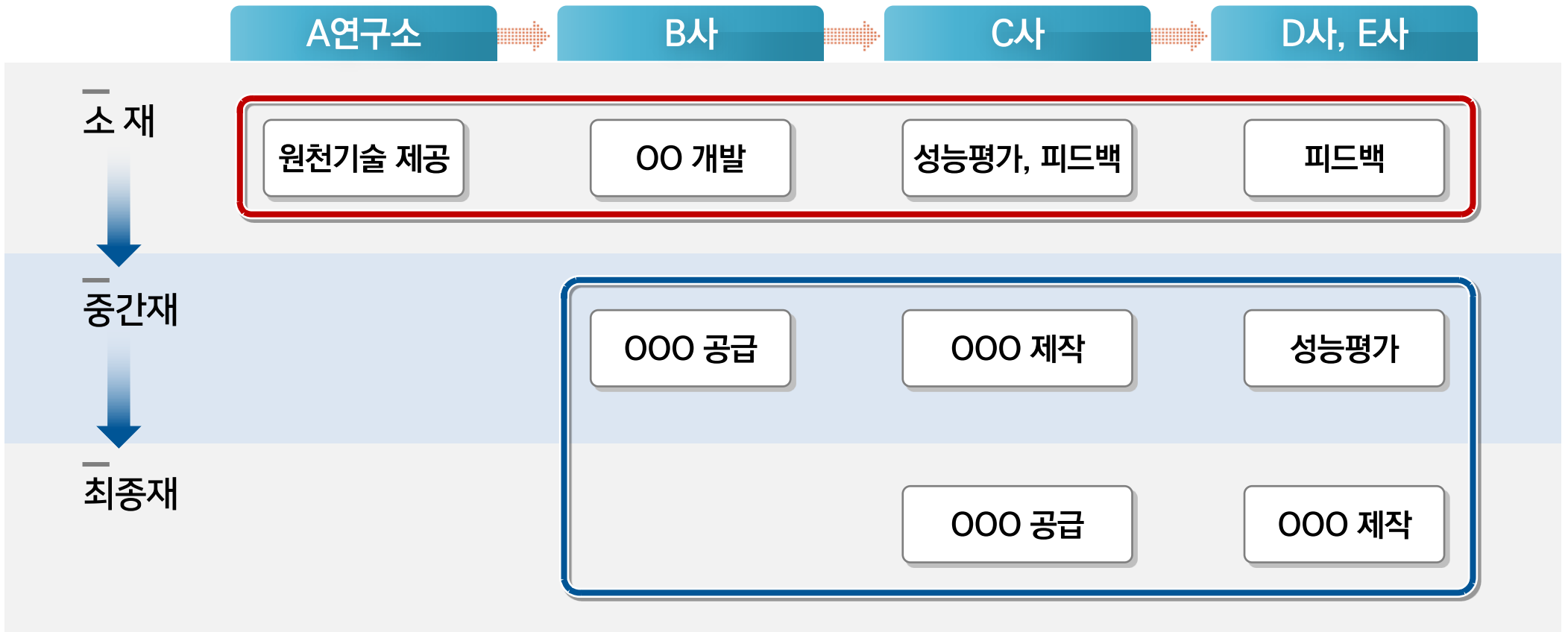
(공급기업) G社 (반도체용 세라믹)
(수요기업) H社, I社 등

- **기술개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신규 히터기술 개발 추진 (추경 50억원)
- **공급망 연계**
신규개발한 히터를 수요기업 장비로 성능평가 연계
- **정책자금**
100억 규모 공장증설 투자에 산은 등 정책자금 지원
- **규제완화**
공장 신축관련 환경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



협력유형 사례 _ 혼합형

협동 연구개발 ⊕ 공급망 연계





부처별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19년 예산	'20년 예산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	589,068	1,074,121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반구축 사업	80,915	200,396
산업부 소계		669,983	1,274,517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	-	118,630
	소재·부품·장비 관련 자금 지원	-	190,000
중기부 소계		-	308,630
과기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	98,270	205,11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반구축 사업	4,774	6,895
	기타(연구운영비 지원 등)	37,791	101,802
과기부 소계		140,835	313,816
금융위	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조성 등	-	200,000
합계		810,818	2,096,963